

보도자료	2009년 2월 1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<p>[의결안건] 가. 통신정책기획과 권병욱팀장(1880) 나. 주파수정책과 김정삼과장(2270) 다. 시장조사과 이창희과장(2630) [보고안건] 가. 통신이용제도과 전성배과장(2550) 나.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과장(2410)</p>

2010년 제8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[의결안건]

가. 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

- 적정 시내공중전화대수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산정토록 「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- 개정안은 제64차 위원회('09.12.30)에서 기보고했던 제도개선(안) 내용과 동일하며,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손실보전금 산정대상 시내공중전화대수의 개념 정의(제6조제5호), 손실보전금 산정방식(제9조제5호)을 신규 규정

【'09.12.30 위원회 보고 주요 제도개선(안)】

- 최소 필요한 적정공중전화대수를 산정하여 손실 보전
 - '09년 11월 현재 97,101대에서 17%(16,826대) 감소한 80,275대를 적정공중전화 대수로 산정하여 손실보전
 - ※ 연도별 적정공중전화 대수는 '08년 94,275대 '09년 87,275대, '10년 80,275대
 - 산정기준은 광역시/시 인구 3천명당 1대, 도농복합시/군 인구 5백명당 1대, 광역시/시/도농복합시/군 모두 2Km당 1대씩 59,654대를 산정(특수지역은 20,621대를 산정)
- 콜렉트콜 수입 및 낙전수입을 공중전화 수입에 포함
- 번호를 기준으로 회선수를 산정하는 등 시내전화 손실보전금 산정기준을 명확화

나. 800/900MHz 및 2.1GHz 주파수 할당계획(안)에 관한 건(첨부1 참조)

-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,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

- 「800/900MHz 및 2.1GHz 주파수 할당계획(안)」을 수립하고 주파수할당 공고 및 할당대가 산정·부과에 관한 고시제정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함

※ 주파수할당계획(안)은 제5차 위원회('10.2.3)에서 보고했던 사항으로 토론회와 전자공청회 및 관계 부처협의를 거침

< 의견수렴후 심사항목 일부 수정 >

구분	내용
항목조정	“서비스제공계획의 적정성”항목에 무선인터넷망 개방, MNO 활성화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배점도 확대(5⇒10점)
유사항목 통합	“트래픽 수용계획의 우수성(5점)”과 “전파간섭 대책의 우수성(5점)” 항목을 통합 (10⇒5점)
명칭명료화	“네트워크 고도화계획의 우수성” ⇒ “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” “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우수성” ⇒ “녹색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”
신청기한	할당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당초 3월중순경 ⇒3월말로 연장

다. (주)케이티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-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에 따라 (주)케이티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'08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,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심의하여 의결함

※ 대상사업자: '08년말 기준 149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 분담 및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대상인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사업자

- 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하였으며, 전기통신사업 관련 매출을 누락하거나,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을 회계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됨
-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,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각 사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함
 - ※ 각사별 과태료 금액: **1,000만원**(SKT), **700만원**(KT, (구)KTF), **300만원**(LGT, SKB, (구)LG데이콤, (구)LG파워콤, SK네트웍스, (구)삼성네트웍스, 온세텔레콤, SK텔링크, 드림라인, KT파워텔, 세종텔레콤, CJ헬로비전, 드림씨티방송, 씨앤엠, 티브로드홀딩스, 티브로드한빛방송, 티브로드기남방송, 티브로드ABC방송)

[보고안건]

가. USIM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(첨부2 참조)

- 서비스에 단말기 유통이 종속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"USIM Lock 해제"의 취지를 달성하고, 개통 지연 및 USIM을 별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USIM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나.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
- KBS가 자사 수원센터 시설 중 일부인 제작지원센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보고함

※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·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, 구성·운영되는 총리 소속의 법정위원회

※ KBS의 수원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청사로 분류되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용도변경 가능

[첨부1]

주파수할당 공고 주요내용

1. 할당대상 주파수

- 800MHz/900대역 : 839~849MHz(10MHz)/884~894MHz(10MHz)
905~915MHz(10MHz)/950~960MHz(10MHz)
- 2.1GHz대역 : 1920~1940MHz(20MHz)/2110~2130MHz(20MHz)중 각 10MHz

2. 할당에 관한 사항

할당대역	할당방법	이용기간	사업자당 할당대역폭
800/900MHz	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방식 (전파법제11조)	2011.7.1~ 2021.6.30일(10년)	20MHz
2.1GHz		할당절차완료후 즉시 ~ 2016.12.3일까지	

3. 기술방식

- 3G이상의 기술방식(IMT-2000 또는 IMT-Advanced)으로 하되, 할당공고 당시 이미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현재 이동통신 역무에서 운용중인 전송방식과 다른 신규 전송방식(현재의 CDMA/WCDMA → OFDMA 등)을 도입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다만, 4G 기술방식은 승인요건에 무관하게 활용 가능

- ※ 승인요건 : ① WiBro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(2010.2.9) 사업자의 이행계획에 따라 WiBro 투자를 성실히 이행시
② 비WiBro 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시

4. 할당대가

-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.4%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.6%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 (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: 6,092억원)

※ 800/900MHz대역 각 2,514억원, 2.1GHz대역 1,064억원

5. 주파수할당 신청자격

- 800MHz/900MHz대역은 800MHz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

6. 망 구축의무 및 제재 조치

- 망 구축의무 :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 15%, 5년 이내 30%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“주파수이용계획서”에 제시토록 하고

< 기지국 설치기준 >

구분	기준 기지국수	3년 이내 15% 이상	5년 이내 30% 이상
800/900MHz대역	5,400국	810국	1,620국
2.1GHz대역	7,400국	1,110국	2,220국

- 신청법인이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
- 제재조치 :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, 할당 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예정임

< 제재 조치(안) >

- ◇ 중간(3년 및 5년) 점검결과 미이행시 : 이용기간 10%씩 단축 (할당대가 반환 없음)
- ◇ 이용기간 종료(재할당)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: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
- ◇ 자료제출 미이행시 : 이용기간 5%씩 단축

7. 할당신청 및 대역배정

- (할당신청) 할당신청기한은 2010월 3월 31일까지. 아울러, IMT-2000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도 필요
- (대역배정) 800/900MHz대역은 대역구분 없이 하나의 신청대역으로 하며,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법인 순으로 할당 대역 선택권을 부여함. 단 동점의 경우 합의 또는 추첨으로 정함

8. 할당심사기준

- (심사사항) 3개 심사사항 및 13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배점

심사사항	심사항목	배점	계
①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	①-1 네트워크 구축계획의 적정성	10	50
	①-2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	10	
	①-3 녹색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	5	
	①-4 트래픽 수용 및 전파간섭대책의 우수성	5	
	①-5 서비스제공계획의 적정성	10	
	①-6 통신시장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	10	
② 재정적 능력	②-1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	7	25
	②-2 재무구조(계량) - 수익성, 안정성, 성장성, 신용등급	12	
	②-3 심사사항 ①, ③과 자금조달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	6	
③ 기술적 능력	③-1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	7	25
	③-2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	8	
	③-3 운용보전계획,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	5	
	③-4 해당역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 계획의 우수성	5	
총계		100	100

- (할당대상 선정)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각 60점 이상이어야 하며, 총점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

USIM 제도 개선방안

1. USIM을 활용한 이통사 전환 가입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이통사는 자기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 정보만 관리하면서, IMEI 정보가 없는 타사 단말기에 대해서는 통화를 차단
 - ※ IMEI(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)는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
- 이로 인해 이용자가 “기존 3G 단말기를 타 이통사로 전환하여 사용 (USIM 이동)”하고자 하는 경우,
 -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 전송(기존 이통사 → 신규 가입 이통사)을 신청해야 하고,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자의 경우 **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되는 등의 불편 발생**

□ 개선방안

- 이통사의 IMEI 관리가 단말기 분실/도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므로, IMEI를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,
 - 우선 이통사간에 **IMEI를 공유**토록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와 IMEI 전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없이 USIM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

2. USIM 단독판매 및 개통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이통사는 단말기 없이는 **USIM 판매 및 개통을 기피하고** 있어, “USIM Lock 해제”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
- 이에, **USIM만 있으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토록** 하여 단말기 교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이를 통해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유인을 낮추는 등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

□ 개선방안

- 이통사 대리점에서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거부하는 행위가,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구매 및 개통을 제약하는 **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**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**사실조사** 실시
 -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할 경우, USIM이 별도로 판매될 수 있도록 **가입절차**를 개선하고, **이용약관·가입신청서**에 동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
- 한편,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아직 없으므로, 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

3. USIM 홍보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아직 이용자는 USIM 용도, 필요성 및 USIM을 이용한 이통사 전환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,
 - 이통사에서는 동 내용을 **이용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않고 있음**
- 특히, 단말기(USIM 포함) 분실/도난 대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, 분실/도난으로 인한 타인의 통화료 부담 피해 사례 발생

□ 개선방안

- 통신사업자연합회(KTOA), 이통사 등이 협력하여 USIM 용도·필요성 등과 관련한 홍보 및 관련 **홍보책자 제작·배포**를 추진
- 이통사에는 가입신청서, **USIM칩** 등에 USIM 및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방법, 분실/도난시 대처 방법 등을 명시하고,
 - USIM 관련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영업직원 대상의 교육을 지속

4. USIM 가격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이통사에서는 가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를 위해 가입비(SKT 39,600원, KT 24,000원, LGT 30,000원)를 받고 있으나,
 - 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USIM도 7 ~ 11천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, 가입 관련 비용의 이중부담 문제 제기

【 이통사 USIM 판매가격 】

구분	SKT		K T	
	통신전용	복합용(통신+금융 등)	통신전용	복합용(통신+금융 등)
판매가격	9,900원	11,000원	7,700원	9,900원

□ 개선방안

- 단기적으로는 이통사와 협의하여 USIM 판매가격이 USIM 공급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**USIM 판매가격 인하** 유도
 - ※ 이통사는 '10.2월까지 통신전용 USIM 약 2,000원, 복합용 약 1,000원을 인하할 계획
- 중장기적으로는 **USIM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하여** 가입에 필요한 적정 비용 합계를 산정하고,
 - USIM 가격과 가입비를 동 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